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9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가합17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청구의 소
원 고	[redacted]시
피 고	A
변 론 종 결	2017. 10. 18.
판 결 선 고	2017.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B 주식회사에게 139,042,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7.부터 이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9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로서 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인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자이다. 피고는 B와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C 소유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C의 [redacted]건설, B에 대한 신축공사 도급, 하도급

1) C는 2007. 6. 20. 주식회사 보현종합건설(이하 '[redacted]건설'이라 한다)에게 C 소유인 [redacted]시 D(이후 등록전환 및 분할 절차를 거쳐 지번이 'E'로 변경되었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동주택 19세대(가칭 'F건물 F동 가, 나동'을 말하고, 그 중 나동 건물이 앞서 본 이 사건 건물과 같으며, 가, 나동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면서 그 대금 지급방법은 현금 및 대물변제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2) [redacted]건설은 2007. 11. 7. B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건축공사 중 새시 · 잡철공사를 공사금액 1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면서 그 대금 지급방법은 현금 및 대물변제(B동 101호, 102호, 203호, 204호)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 B회사(G), 피고 사이의 합의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C는 2011. 5.경 B와 피고 사이에, B의 대표이사 G 및 피고 명의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신축건물(이 사건 건물 포함)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은 38억 원으로 정한다. ○ 그 대금의 지급은, 위 38억 원에서 [redacted]건설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11억 8,400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9

원과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와 B가 연대하여 C에게 지급하되, 이 사건 신축건물 준공 후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 C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신축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무는 ① 채권최고액 27억 3,000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redacted]협동조합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② 채권최고액 4억 9,000만 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redacted]협동조합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③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J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이다."라는 취지이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의 채권자인 [redacted]협동조합이 신청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11. 6. 2.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11. 7. 2011.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redacted]협동조합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8. 13. [redacted]지방법원 K 경매개시결정이 있어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2016. 10. 27. 경락인들에게 매각되었다.

마. 원고의 B에 대한 채권과 B의 무자력

1) 원고는 2013. 10. 31. B에게 'B가 [redacted]시 E 지상 공동주택 19세대(이 사건 신축건물)[가동 10세대, 나동 9세대(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임에도 피고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납기기한 2014. 1. 31.로 정하여 과징금 346,800,000원을 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9

과하였다(이하 '과징금 채권'이라 한다).

2) B는 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2015.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B에 대한 과징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하여, 피고는, 과징금 부과기준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가액인데 B는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인하여 실제 지급받은 금원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 가액도 0원이고 과징금도 0원에 불과하여 원고의 B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대위소송인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으로 본다.

나.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 처분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할 것이 요구되는데, 피고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B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9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B에 대한 과징금 채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B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가) 이 사건 합의서는 C가 [redacted]건설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redacted]건설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하되, 그 대금지급방법은 이 사건 건물을 대물변제하기로 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으로서 매도인인 C가 명의신탁사실을 몰랐으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유효하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대상인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지칭하고 있을 뿐이기는 하나, 소장 및 위 변경신청서상 기재내용에 비추어 소장에 첨부된 부동산 목록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본다).

나) 별지 2 기재 표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총 매매대금은 3,800,000,000원이고, 보현종합건설에 대한 채무 1,184,000,000원, 화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1,911,000,000원 및 343,000,000원, J에 대한 채무 70,000,000원 등 이 사건 신축건물(가동 및 나동)에 관한 채무부담액 합계 3,580,000,000원이며, 그 중 이 사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9

건물(나동)에 관한 채무부담액은 [redacted]건설에 대한 채무 563,787,200원, [redacted]협동조합 등에 대한 채무 1,106,622850원 합계 1,670,410,050원이다. 총 매매대금 3,800,000,000원 중 이 사건 건물(나동)에 관한 매매대금은 면적비율에 따라 1,809,452,170원이므로, 위 금액에서 앞서 본 이 사건 건물(나동)에 관한 채무부담액 합계 1,670,410,050원을 공제하면 남는 139,042,120원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 상당액이다. 따라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 상당액 139,042,12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

원고는 피보전채권으로 B에 대하여 과징금 채권이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B에 대하여 과징금 채권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B의 무자력도 인정되는바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채권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대위권리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데, 먼저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의 성격 및 효력을 살펴본 후, 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2)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의 성격 및 효력

가)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의 성격

(1)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9

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등 참조).

(2) 한편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관하여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한다는 당사자의 주장책임을 인정하는 원칙으로서 주장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법적 판단은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계약명의신탁인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에 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에 관한 것이다.

(3)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의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C는 B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에 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보현종합건설은 C로부터, B는 보현종합건설로부터 각 이 사건 신축건물 중 일부를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② 이후 C와 피고, B(이 사건 합의서상 명의인은 B의 대표이사인 G이나, 이 사건 합의서상 문구, 내용,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의 지위를 혼동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합의서상 당사자는 B로 본다)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C로부터 피고 명의로 이전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와 B가 연대하여 지급하되, 약정 매매대금액에서 보현종합건설의 B에 대한 채무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합의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9

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주체가 C와 피고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B도 포함되고,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매매대금액에서 C의 수급인인 [redacted]건설이 B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를 공제하는 한편, 피고뿐만 아니라 B도 연대하여 C에게 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드러난 당사자들의 의사는 C가 [redacted]건설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redacted]건설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위변제의 방식이 이 사건 건물을 대물변제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명의를 B가 아닌 피고 앞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B의 대표이사인 G과 피고 역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에 앞선 조사 당시 '이 사건 건물은 B의 공사대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실제 B가 C로부터 취득한 것인데, 그 명의만을 피고 앞으로 신탁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상 계약당사자는 B로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등

(1)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가 된다. 한편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C와 신탁명의자인 B 사이에 이루어진 원인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매도인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9

구할 수 있고, 아울러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참조). 명의신탁자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290, 55306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로부터 경락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제3취득자인 경락인들은 유효하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경우 명의신탁자인 B가 직접 명의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취득한 이익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의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 여부

가) 법리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같은 법 제4조 제3항). 그로 인하여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9

판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실명법의 시행 이후에 3자간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에 의한 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07235 판결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B는 [redacted]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대물변제받기 위하여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락인들이 명의수탁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함으로써 결국 명의신탁자인 B는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C로부터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음은 인정된다.

(2) 피고로부터 경락인들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2016. 9. 1. 이 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8억 100만 원에 매각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피고에게 명의신탁될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① [redacted]지방법원 [redacted]등기소 2011. 7. 22. 접수 제76597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22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비엔씨건설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② 비록 소유권 이전된 이후인 2013. 3. 29. 접수된 등기이긴 하나 2011. 5. 30. 추가설정계약에 기하여 채권최고액 27억 3,000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redacted]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아직 배당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는바, 나아가 배당절차에서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도 남은 잉여금이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9

게 그 잉여금이 지급됨으로써 피고가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 밖에 경락인들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취득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되었거나 피고에 의하여 설정된 것이 아닌 근저당권에 기하여 실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그 소유권이 경락인들에게 이전된 것이어서, 피고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소결

따라서 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노진영

판사 김지영

판사 이태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9

별지 1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
[]연립 제나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나-101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1층 101호 104.86㎡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남양주시 []
임야 2093㎡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2093분의 111.38

2.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
[]연립 나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나-102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1층 102호 104.86㎡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남양주시 []
임야 2093㎡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2093분의 111.3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9

3. 1동의 건물의 표시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연립 나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나-201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2층 201호 104.86㎡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남양주시
임야 2093㎡
대지권의 종류 : 1. 소 유 권
대지권의 비율 : 2093분의 111.38

4. 1동의 건물의 표시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연립 나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나-202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2층 202호 104.86㎡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redacted]도 [redacted]시
임야 2093㎡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2093분의 111.3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9

5. 1동의 건물의 표시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redacted]연립 나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나-301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3층 301호 104.86㎡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임야 2093㎡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2093분의 111.38

6. 1동의 건물의 표시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redacted]연립 나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나-302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3층 302호 104.86㎡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redacted]시 [redacted]
임야 2093㎡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2093분의 111.3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9

7. 1동의 건물의 표시

[redacted]시 [redacted]
[redacted]연립 나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나-401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4층 401호 104.86㎡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redacted]도[redacted]시 [redacted]
임야 2093㎡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2093분의 111.38

8. 1동의 건물의 표시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redacted]연립 나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나-비01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지하층 비01호 102.10㎡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redacted]도[redacted]시 [redacted]
임야 2093㎡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2093분의 108.4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9

9. 1동의 건물의 표시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redacted]연립 나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나-비02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지하층 비02호 102.10㎡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임야 2093㎡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2093분의 108.47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9

별지 2

표

구분	부담액	산출내역	비고
가.나동합의금총액	3,800,000,000		
가.나동부담액합계	3,508,000,000	[redacted]- 1,184백만원[redacted]농협- 1,911백만원, [redacted]2- 343백만원, [redacted]- 70백만원.	
나동 [redacted]부담액	563,787,200	(1,184,000,000원/1970.34평방미터)*938.22평방미터(나동 연면적) [[redacted]부담액:1,184,000,000원]	
나동[redacted]농협외2 부담액	1,106,622,850	{2,324,000,000원*(938.22㎡/1970.34㎡)}=1,106,622,850원	
나동 부담액합계	1,670,410,050		
나동 합의금지분	1,809,452,170	{3,800,000,000원*(1970.34㎡/938.22㎡)}=1,809,452,170원	
나동 부당이득금	139,042,120		

끝.